

1. 개정이유

항공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장려하고 안전을 위해 항공기 운항을 자발적으로 중지시킨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정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반영하며, 기타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신규 시설 신설(안 제8조제2호자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 제3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 정보통신시설 중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신설

나.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과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안 제2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규정에 없는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을 신설하고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운항정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공항의 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용어의 정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제1호)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행장설치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체계적으로 적절한 “항공안전시설” 대신 “항공

등화시설” 용어를 정비

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별표 2, 별표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예 따라 변경된 내부진입표면의 폭 및 착륙복행표면의 내측저변의 길이의 기준과 항공등화의 종류를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항공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제20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종류

가. 착륙료

나. 조명료

다. 정류료

라. 여객공항이용료

마. 촬영 및 광고료

바. 토지, 건물, 상업시설 등 사용료

사. 주차장 사용료

아. 계류장 사용료

자. 그 밖에 공항운영자가 징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용료

2. 사용료 산정기준

가. 착륙료 : 당해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

나. 조명료 : 조명서비스를 받는 항공기 대수

다. 정류료 : 당해 항공기의 무게 및 정류시간

라. 그 외 사용료 :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산정기준

⑥ 제5항제3호가목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는 제4항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를 말하며, 제7항에서 정한 면제대상 사용료 이외에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5항제3호의 감면규정에는 항공운송사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한 때에는 해당 항공기의 정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9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정비규정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점검이나, 고장·결함 또는 행정처분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공기의 설계·제작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

2.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항공기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중 “비행설치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2 중 “155미터로 한다”를 “내부진입표면의 폭과 착륙복행표면 내측저변의 길이는 140미터로 한다. 다만, 항공기 복행(go-around) 기동시 미리 수립된 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제공해주는 자동항법장치(Digital avionics)를 장착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120미터로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 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활주로회전패드등(Runway Turn Pad Lights): 활주로 회전패드에
서 항공기가 180도 회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5.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Rapid Exit Taxiway Indicator lights): 조종사에게 활주로에 가장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활주로가시범위 350미터 미만의 조건 또는 교통밀도가 고밀도일 때 착륙 이후 활주로를 효율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6. 활주로상태등(Runway Status Lights): 활주로에서 항공기와 항공기 또는 항공기와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 또는 승
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 개월 이내에 제 20 조제 4 항부
터 제 7 항에 따라 재신고 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
시설을 말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이동통신시설	2. -----
가. ~ 아. (생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u><신설></u>	<u>자. 공항이동통신시설</u>
	<u>(AeroMACS)</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항
	<u>운영자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u>
	<u>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다음</u>
	<u>각 호와 같다.</u>
	<u>1. 사용료의 종류</u>
	<u>가. 착륙료</u>
	<u>나. 조명료</u>

④ (생략)

<신설>

다. 정류료

라. 여객공항이용료

마. 촬영 및 광고료

바. 토지, 건물, 상업시설 등
사용료

사. 주차장 사용료

아. 계류장 사용료

자. 그 밖에 공항운영자가 징
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용료

2. 사용료 산정기준

가. 착륙료 : 당해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

나. 조명료 : 조명서비스를 받
는 항공기 대수

다. 정류료 : 당해 항공기의
무게 및 정류시간

라. 그 외 사용료 :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산정기준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제3호가목에 따라 감면

<신 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용료
의 종류는 제4항제1호에서 정
한 사용료를 말하며, 제7항에
서 정한 면제대상 사용료 이외
에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항제3호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5항제3호의 감면규정에는
항공운송사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로 항공기의 운항을 정
지한 때에는 해당 항공기의
정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93조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정비규정에 의거 항공운송사
업자가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점검이나, 고장·결합 또
는 행정처분 등 항공운송사업

	<u>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항공기</u> <u>의 운항을 정지하는 경우에는</u> <u>그러하지 아니한다.</u> <u>1. 항공기의 설계·제작 결함</u> <u>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을 정</u> <u>지해야 하는 경우</u> <u>2.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u> <u>전조치를 위해 항공기 점검을</u> <u>수행하는 경우</u> <u>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u> <u>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u> <u>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u> <u>한 경우</u>
제22조(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협 의) ① (생 략)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요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비행장설치자</u>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협 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u> <u>사업시행자등</u>-----.

1. · 2.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를 받은 <u>비행장설치자</u>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항공안전시설</u>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u>-----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 ----- ----- 1. <u>항공등화시설</u>-----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335